#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35

발의연월일: 2024. 9. 10.

발 의 자:양부남・최민희・정준호

오세희 • 박홍배 • 채현일

정진욱 • 박균택 • 전혐희

강준현 • 이성윤 • 강유정

윤건영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.

그러나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의적인 반복·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 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・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법이 정보공개와 무관한 내용의 청구도 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가 민원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보공개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정보공 개 청구의 내용이 '정보공개에 관한 건의・질의'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민원으로 전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.

또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받은 공공기관은 기 접수한 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보공개에 따른 실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청구 비용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2항·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"진정·질의"를 "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·질의"로 한다.

다만,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한다"를 "하고,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개 이상의 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이미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대량 또는 반 복적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

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2회 이상 취하하거나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의 공개를 청 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 ①	제11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	4
이 보유・관리하는 정보의 공	
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	
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	
하여야 하며, 이송한 후에는 지	
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	
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	
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	
<단서 신설>	<u>다만, 해당 정보를 보유·관리</u>
	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
	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송
	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	5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로서 「민원 처	
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원	
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	
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개 청구의 내용이 <u>진정ㆍ</u>	2 <u>공공기관의</u>
<u>질의</u>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	정보공개에 관한 건의・질의

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의2(반복 청구 등의 처리) 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, 종전 청구와의 내 용적 유사성・관련성, 종전 청 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 한 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 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 에11구시아비
세11조의2(반복 청구 등의 처리) ①
(1)
<u></u> <u></u>
고, 그 이후 접수되는 반복 청
구에 대하여는 통지를 생략할
<u>수 있다.</u>
1. · 2. (현행과 같음)
②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
구하고 청구인이 2개 이상의
공공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
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공
공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
이미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와
동일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17조(비용 부담) ① ~ ③ (생 략)

<신 설>

<u><신</u>설>

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 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 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정보 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 로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 개심의회를 거쳐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제17조(비용 부담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

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후 그 청구를 2회 이상 취하하 거나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 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 상 있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 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 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적용에 필요한 구

<u>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한다.</u>